

Ⅱ - 44	제 목	합병으로인한 불법행위 승계여부(1)		
회신일자	2002년 12월 26일	회신방법	산자부 사이버민원실	
의 요 지				
○ 타업체와 달리 우수한 전기공사실적을 이용하기 위하여 불법면허 대여 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 양수한 전기공사업체를 해당면허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업체와 합병시키며 우수한 실적만 갖고 영업을 할 경우 질의) 불법면허 대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건지?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? 조사를 해서 불법대여가 인정될 경우 제재조치는 합병한 회사가 당하는 건지?				
회 신 내 용				
답변) 법인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,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,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합병회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존속하는 회사에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피합병회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방법은 사법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거나 전기공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·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.				